

#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8. 8. 14.
4. 회부일자 : 2018. 8. 21.

### II . 제안이유

-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III . 주요내용

1.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3조).
2.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안 제4조).
3. 취업지원센터의 조직(안 제6조).

## IV.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조(특수목적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91조제1항(특성화고등학교)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18. 4. 30. ~ 5. 20.)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별첨 4)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6호로 제출되어 2018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의 신설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취업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은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up>1)</sup>.

동 조항은 지난 2018년 3월 27일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1)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3. 27.],[시행일 : 2018. 9. 28.]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9월에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한바 있고,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산·학·관 연계 협력을 통한 취업처 발굴과 취업진로 프로그램의 운영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취업지원센터는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취업 준비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가능토록 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에 대한 의견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총칙부분(안 제1조~안 제2조)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조직 및 예산 지원 등의 본칙부분(안 제3조~안 제9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적용범위에 관한 의견(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학생의 범위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또한 일반고등학교 재학생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바, 이들 학생들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의 별표6에 따른 각종학교<sup>2)</sup>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각종학교 중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이며, 오디세이학교는 고교 자유학년제<sup>3)</sup>의 운영을 위한 각종학교로, 이들 학교는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별표6]  
 각종학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8교)	서부(2교)	마포구(1교)	아현산업정보학교	마포구 마포대로 249
		은평구(1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은평구 가좌로 208
	중부(3교)	종로구(3교)	종로산업정보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오디세이학교	종로구 종로58길 28 종로구 종로58길 30 종로구 종로58길 30 (송인동)
	강남서초(1교)	서초구(1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69
	동작관악(1교)	관악구(1교)	서울산업정보학교	관악구 신림로 67
	남부(1교)	금천구(1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독산동)

3) '고교 자유학년제'란 일반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집중적인 중점 과정을 선택하여 1년 동안 깊이 있는 체험과 자아 발견의 기회를 갖게 하는 전환학년(Transition Year)교육과정임. '오디세이 학교 추진 기본계획', 2쪽, 서울시교육청(2015.3.)

○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안 제2조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학교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취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학생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취업지원 고등학교 현황

(기준 : 2018년 7월, 단위 : 교, 명)

구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공업계	상업계	
학교수	4	30	40	6
학생수	1,796	19,277	24,160	2,376
학교명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로봇고 수도전기공업고	강서공고, 경기기계공고, 광운전자공고, 단국공고, 대진디자인고, 덕일전자공고, 리리아트고, 미래산업과학고, 상일미디어고, 서울공고, 서울디자인고, 서울디지텍고, 서울방송고, 서울방송고, 서울아이티고, 서울전자고, 성동공고, 성수공고, 세명컴퓨터고, 송파공업고, 신진과학기술고, 염광여자메디텍고, 영등포공고, 용산공고, 유한공고, 은평메디텍고, 인덕공고, 한강미디어고, 한세사이버보안고, 한양공고, 휘경공고	경기상고, 경기여상고, 경북비즈니스고, 고명경영고, 광신정보산업고, 대경상고, 대동세무고, 대일관광고, 덕수고, 동구마케팅고, 동명여자정보산업고, 동산정보산업고, 동일여상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서울관광고, 서울금융고, 서울문화고, 서울여상고, 서울영상고, 서울컨벤션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서울국제경영고, 선린인터넷고, 선일이비즈니스고, 선정국제관광고, 성동글로벌경영고, 성암국제무역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송곡관광고, 신정여상고, 영락유헤스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예림디자인고, 예일디자인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일신여상고, 정화여상고, 해성국제컨벤션고, 홍익디자인고, 화곡보건경영고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산업정보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자료

3) 취업지원센터의 조직에 관한 의견(안 제6조)

○ 안 제6조는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교육전문직, 교사 등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취업지원관의 채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취업지원센터는 진로직업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면서 취업지원팀의 장학관과 장학사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관 협력팀, 취업역량 강화팀, 취업지원 서비스팀 등 3개 팀에는 파견교사 1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 그리고 별도로 채용된 취업지원관<sup>4)</sup> 8명이 취업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붙임〕참조).
- 안 제6조는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취업지원관의 채용에 관한 조례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취업지원센터 현원**

(기준 : 2018년 8월, 단위 : 명)

구 분	과장	장학관	장학사	팀 장	취업지원관
인원	1	1	1	2	6 <sup>5)</sup>
구성	본청 겸직	본청 겸직	본청 겸직	사립학교 파견교사 1명 주무관 1명	계약제

- 다만, 현재 취업지원센터에 채용된 취업지원관은 ‘고졸취업지원확대사업’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예산 배정 시기에 따라 그 채용기간이 5개월 또는 9개월로 매우 유동적입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sup>6)</sup>에 따라 취업지원관은 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

4) 취업지원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 채용하는 한시적 근로자로서, 우수 취업처 발굴 등 취업기반 관련 업무와 학생, 교사 연수의 지원, 온라인 취업지원 시스템 관리 및 기타 취업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5) 2018년도 취업지원관 총 8명 중 2명은 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6명은 취업지원센터에 배치 운영.

6)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관에 대해 상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취업지원센터는 동 조례의 제정을 근거로 향후 법률의 개정 또는 조례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과 역할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운영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취업지원센터의 전담인력 채용 및 인력 증원, 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3] 취업지원관 채용 현황**

구 분	취업지원관		채용기간
	인원	전년 근무자	
2013	1	0	2013.11.~ 2014.4.(6개월)
2014	7	0	2014.08.~ 2014.12.(5개월)
2015	7	0	2015.06.~ 2015.12.(7개월)
2016	7	0	2016.06.~ 2016.12.(7개월)
2017	5	1	2017.06.~ 2017.12.(7개월)
2018	8	4	2018.04.~ 2018.12.(9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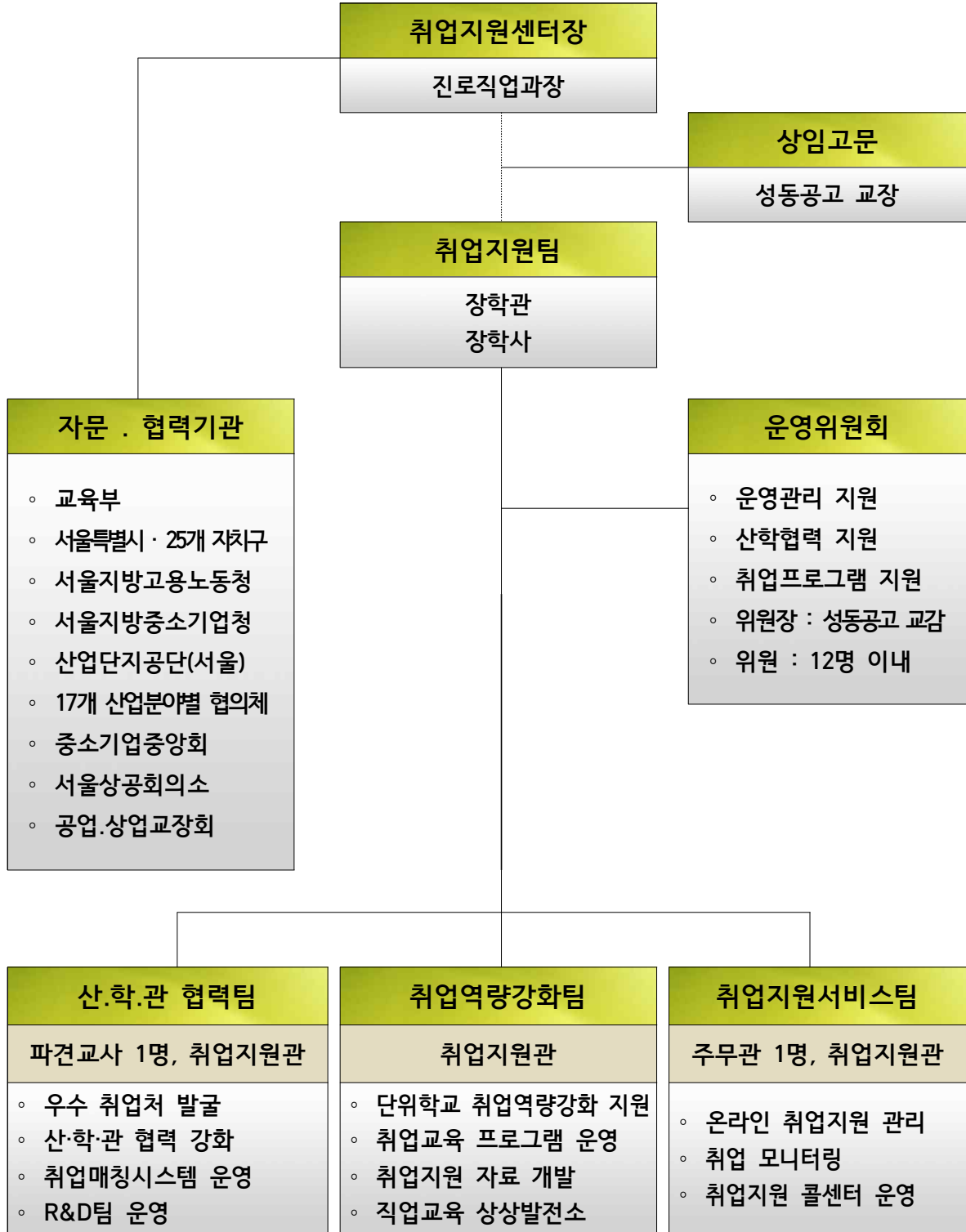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붙임] 취업지원센터 운영조직 현황**



# 관 계 법 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시행일 : 2018. 9. 28.] 제7조의3